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안내 -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 등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입니다. 관세청고시 제2022-15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국민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실행 및 자체 제도개선 발굴 내용 반영
- 2022. 12. 1.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 적용물품 중 용도세율 대상물품 개정 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

II.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

-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시 본청에 건별 공문보고 하던 것을 시스템 등록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현 행	개 정
<p>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용도 외 사용 승인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p> <p>제36조(보고) ① ~ ② (생략) 〈신설〉</p>	<p>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④----- ----- ----- ----- ----- ----- 3. 동일용도 양수도 등으로 ----- ----- -----</p> <p>제36조(보고)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p>

제40조(재검토키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키한) ----- ----- 2023년 1월 1일 ----- ----- 12월 31일 ----- ----- --
--	--

- 사실상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 1의 나)을 별표2의 특기사항에 추가하여 행정상 혼선 방지

(별표 2) - 개정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③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의 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4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1)사후관리 비대상 : ①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사후관리 면제 신청 가능 ①제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2.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 신규 발효 예정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9개 품목)
- 정제유(식품용), 전해액 첨가제(이차전지제조용), 망간(철강제조용), 원유(항공유제조용), 감자전분(식품용) 등 붙임자료 참고

III. 시행 일자

2022. 12. 1. (예정)

IV. 의견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 담당자 : 채정균 사무관, 김송영 행정관
3. 제출기한 : 2022. 11. 21.
4.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83
(팩스) 042-481-7791
(전자우편) you2pia70@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붙임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 대조표
- [붙임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 [붙임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I Contact



유다예 관세사
T 070-4353-1588
E dyyoo@esein.co.kr



이지은 관세사
T 02-6011-3092
E jelee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